



공공목적광고물 가이드라인

Jeollanamdo Public_PurposedAdvertisement Guideline

2010



전라남도
JeollaNamdo

본 보고서는 전라남도 공공목적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리 지침서로서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정서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운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발되었다.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어떠한 부분도 임의로 해석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문의사항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와 협의한다.

원고의 재생 또는 복제는 CD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CD의 정보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 매뉴얼의 내용 중 시대적 요구나 적용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점진적인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반드시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후 수정, 시행하여야 한다.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관리부서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 Tel 061)286-5333

Contents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I. 과업의 개요	07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세부내용	
4 기대효과	
5 프로세스	
II. 기초조사 및 분석	11
1 현황 조사 개요	
2 현황 조사	
3 사례 조사 개요	
4 사례 조사	
5 현황 및 사례 분석	
III. 기본구상	25
1 시행 위계 설정	
2 기본방향	
3 형태·색채·재질방향	
4 심의제도	
5 체크리스트	
IV. 가이드라인	31
1 공공목적광고물 가이드라인	
2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표시·설치 가이드라인	
3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I. 과업의 개요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과업의 목적
- 2 과업의 개요
- 3 과업의 세부내용
- 4 기대효과
- 5 프로세스

1 과업의 목적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공목적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운영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 제고

2 과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목적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
- 사업내용**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등 3종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표시·설치 가이드라인
- 성과품** 가이드라인 300부(각 100부), CD 150매(각 50매)

3 과업의 세부내용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개발
 -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 방법(수량, 색채, 형태·규모 등)
 - 옥외광고물 표시 수량 및 입체 가로형 간판 설치
- 건축물별 가이드라인 설정 및 표준디자인 모델 개발(10종)
 - 국가·지자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동단체(공사,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공동주택 및 부속 상가의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발
 - 옥외광고물 표시 수량 제한 및 입체 가로형 간판 설치
 - 표시금지 광고물 지정
 - 옥외광고물 종류별 표시 방법(수량, 색채, 형태·규모 등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표준디자인 모델 개발



현수막 및 지정계시대 표시·설치 가이드라인

- 현수막 표시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발
 - 크기, 색상, 글자 수, 글자 크기, 줄 수 등
 - 비속·저속한 문구 사용 금지
-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 가이드라인 및 지침 개발
 - 크기, 현수막 걸이 개수, 상단 공공목적 광고, 재질
- 현수막 표준디자인 및 지정계시대 표준디자인 개발

4 기대효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이미지 창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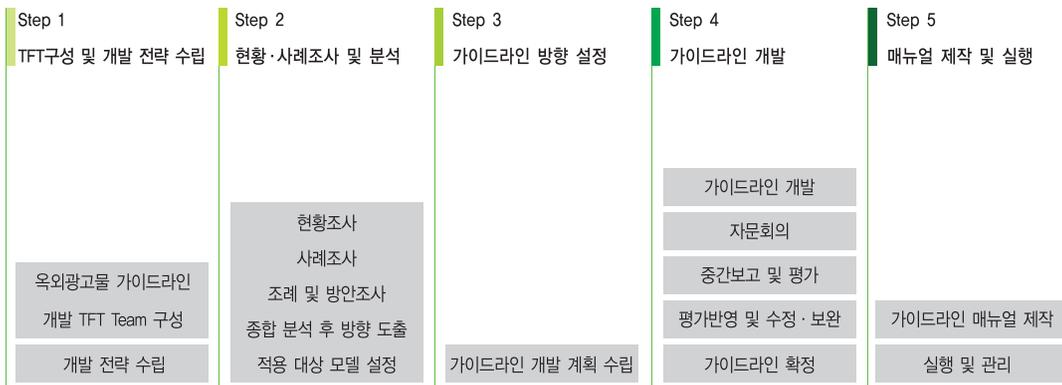


전라남도 이미지 제고



선진사례 및 벤치마킹 모델 창출

5 프로세스



- TFT Team 구성 -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분장
- 수시 실무회의 -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타당성 검증, 보완책 마련
- 업무 프로세스 수립 - 과업의 내용과 목표에 따른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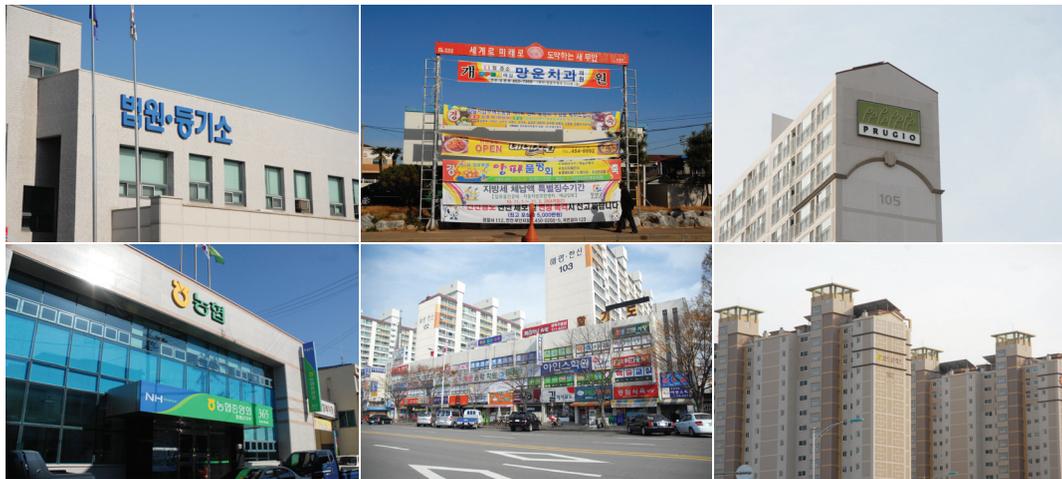
II. 기초조사 및 분석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현황 조사 개요
- 2 현황 조사
- 3 사례 조사 개요
- 4 사례 조사
- 5 현황 및 사례 분석

1 현황 조사 개요

기 간	2010. 11. 12 ~ 11. 24(13일간)	인 원	3명
목 적	현황파악, 지역 아이덴티티 파악, 문제점 도출, 개선사항 파악, 가이드라인 적용 모델 설정		
방 법	온라인 조사, 현장 방문, 문헌 조사(매뉴얼, 개발사례 등)		
대 상	도·시·군청	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목포시청, 순천시청, 담양군청, 함평군청	
	공공목적 옥외 광고물	읍·면· 동사무소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일대의 읍면동사무소
		공사 및 기관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일대의 공사 및 기관
		공동주택 및 상가 옥외광고물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일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 무안군, 담양군, 함평군 일대의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2 현황 조사

공공건물 사인



- 과다한 정보노출로 산만하며 복잡한 이미지 연출
- 과도한 패턴 사용 및 입체감이 떨어지는 표시방법으로 미관을 해치고, 유지보수에 불편하며 주목성과 가시성이 떨어짐
- 보도와 인접하여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점멸방식의 전광판 광고물로 스트레스 이미지 연출
- 지나친 장식물과 주변환경 및 배색을 고려하지 않은 색상사용으로 가독성 저해 및 경관침해

공공건물 사인



- 공공건물 규모에 비해 과도한 이미지 연출
- 판류형 광고물 및 원색의 사용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
- 전라남도청, 광주광역시청의 경우는 신축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사용과 적절한 표기방법으로 선진사례 창출
- 기존 관공서와 신축 관공서간의 격차 심화

현수기



- 반사가 심한 스테인리스 강 재질사용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스러우며 눈부심 등 유발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 부착한 현수막 하단에 180cm 이상의 여유공간을 남겨둬야 하는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않음
- 현수막에 과도한 원색색상 사용과 많은 내용 표기로, 주변경관과 부조화스러우며 가독성 저해

현수막 및 게시대



- 게시물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음
- 반사가 심한 스테인리스 강 재질사용으로 주변경관과 부조화스러우며 눈부심 등 유발로 안전사고 발생우려
- 원색적인 게시물의 색상 사용과 과도한 내용기재로 인해 게시물이 복잡하며 가독성이 떨어짐
- 게시대의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큰 게시물의 부착으로 복잡하고 조잡해 보임
-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자 불편 유발

공동주택



- 과다한 그래픽 노출로 인해 복잡한 이미지 연출
- 배색을 고려하지 않은 동호수 표기사항으로 가독성이 떨어짐
-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사인 기술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지 연출
- 판류형의 표기방법으로 추락에 의한 주민 및 보행자에 위험
- 지면에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 브랜드명 노출

공동주택 상가



- 세로형, 돌출형, 창문이용, 옥상이용 광고물등의 난립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며 불법광고물등으로 인한 보행자 편의 및 안전 위험
- 사인물마다 규격과 색상, 재질이 달라서 주변 미관을 해치며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고 가독성이 떨어짐
- 신도심 개발지역은 규격 및 형태·색상에 대한 관리 및 설치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3 사례 조사 개요

기 간	2010. 11. 25 ~ 12. 5(11일간)		인 원	3명
목 적	현황 비교 분석,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방 법	온라인 조사, 현장 방문, 문헌 조사(매뉴얼, 개발사례 등)			
대 상	도·시·군청	고양시청, 성남시청		
	공공목적 옥외 광고물	읍·면· 동사무소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의 읍·면·동사무소	
		공사 및 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의 공사 및 기관	
		공동주택 및 상가 옥외광고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의 공동주택 및 상가	
		현수막 및 지정계시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대의 현수막 및 지정계시대	



4 사례 조사

공공건물 사인



- 적절한 크기와 재질, 색상 사용으로 건물 마감재 및 주변경관과 조화
- CIP 및 간결한 문자 활용으로 고유 이미지 및 가독성 확보

현수막 지정게시대



- 게시물의 규격과 색상이 통일성있게 사용됨
- 심플한 형태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재질 활용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룸
- 현수막을 고정시켜주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며
규격에 어긋난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예방

공동주택



- 건물의 형태와 색상에 어울리는 배색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움
- 지면과 동일한 표기와 가독성을 고려한 크기와 형태

공동주택상가



개선전



개선후



- 건물에 적합한 규격과 재질 및 형태의 적용으로 통일성 확보
- 건물 마감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배색
- 간결한 형태와 여백을 살려 가독성 확보
- 야간경관 및 가독성을 고려한 조명계획
- 체계적인 관리 및 시행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과 이용자 편의 및 안전성 확보

5 현황 및 사례 분석

현황분석

- 신축건물 및 개발구역을 위주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의 단계
- 지역 및 건물간의 퀄리티 격차가 크며, 전체적으로 광고물의 중복, 과대, 과량의 문제점을 내포
- 원색사용, 화려한 그래픽 및 형태는 주변환경, 배경을 고려하지 않아 경관을 해치고 부조화스런 이미지 표출
-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만연
- 공동주택상가의 경우 불법 광고물의 난립, 구역간의 규격 및 색상 등의 통일성 부재로 인한 복잡하고 산만한 도시경관 표출

사례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 단계
- 주변환경과 조화되며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위주의 공공공간 및 도시이미지 창출에 노력
-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안전성을 고려한 시설 공법 개발·활용
- 자재의 모듈화, 규격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개발·활용
- 통일성, 정체성을 갖춘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수립·실행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잘 읽고 깨끗한 거리이미지 창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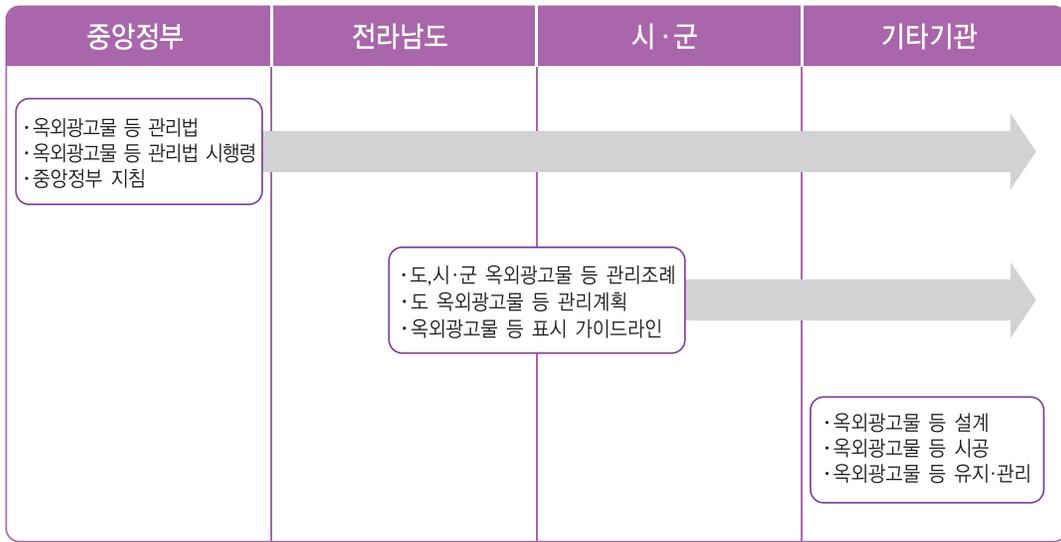
- 화려하기 보다는 차분하고 정돈된 이미지 추구
- 보행자중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필요
- 지역별 통일성 및 정체성 고려
- 자원절약 및 쾌적한 이미지 표출을 위한 불필요한 장식요소 배제
- 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한 수량 및 부피 제한 방안 모색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질 활용

Ⅲ. 기본구상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시행 위계 설정
- 2 기본방향
- 3 형태·색채·재질방향
- 4 심의제도
- 5 체크리스트

1 시행 위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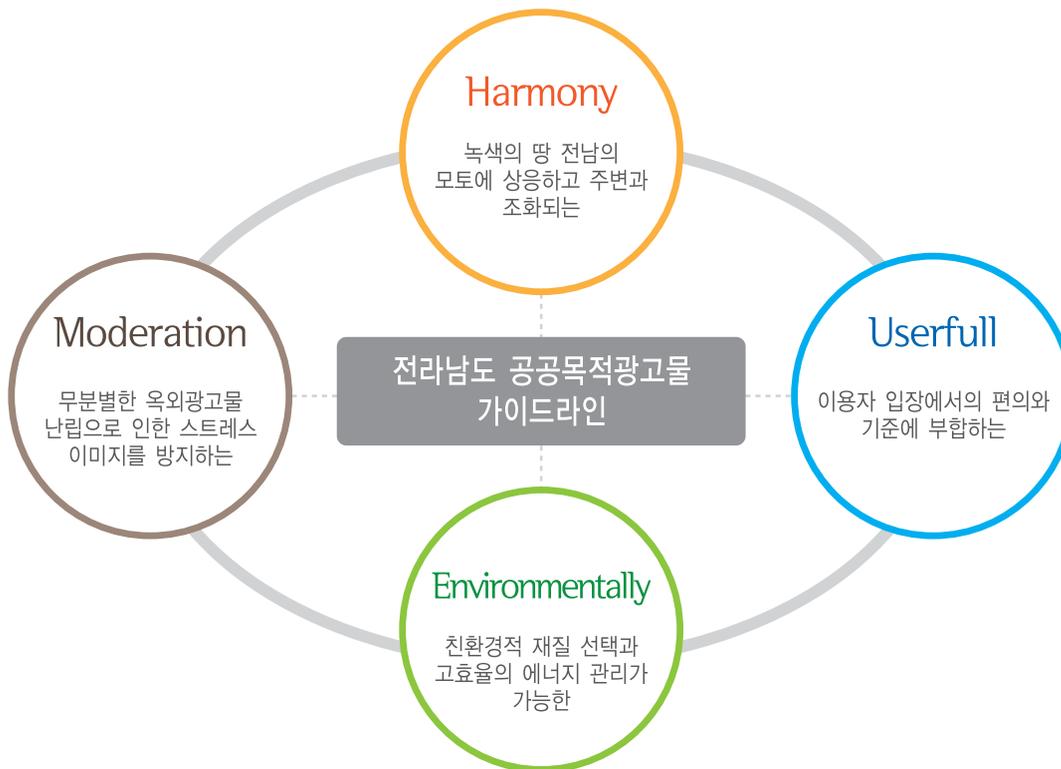
중앙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지침을 계획

전라남도, 시·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계획, 표시 가이드라인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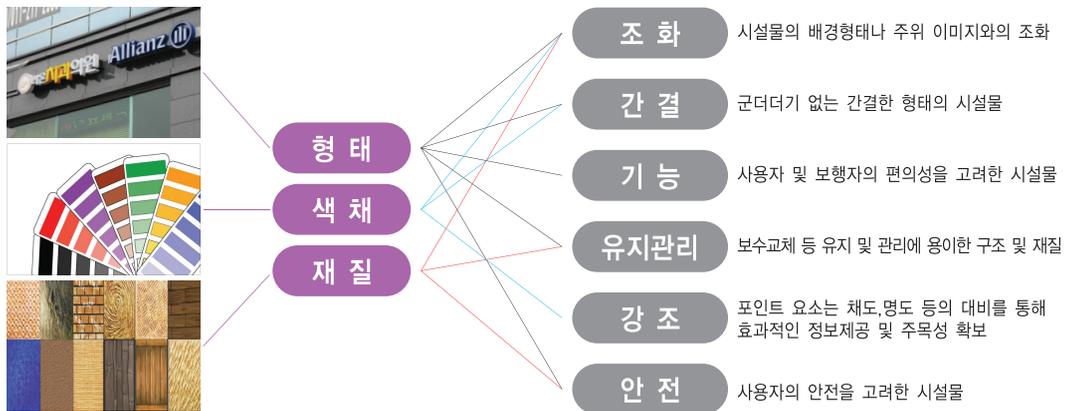
기타기관은 상위 계획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각 행정구역 별로 상위 계획을 준수하여 통합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실행

2 기본방향



3 형태·색채·재질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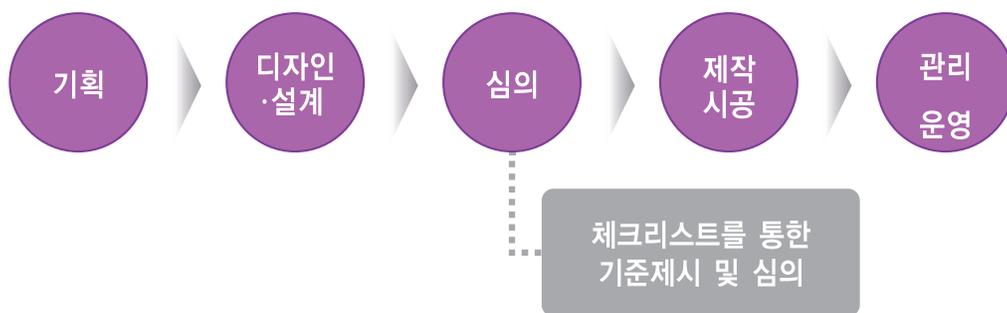


4 심의제도

옥외광고물 등 심의제도 구축·운영

- 심의 및 평가시 전문가에 의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옥외광고물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를 의무화
- 기능, 편의, 안전 외에 경관적, 디자인 측면에서의 심의를 적용
- 심의 평가기준으로써 본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권장하되 지자체 별로 별도의 심의기준을 추가·계획하는것을 허용
- 심의 절차의 최소화 및 효율화를 통해 심의 제도를 정착화
- 사전 심의를 위한 심의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권장

옥외광고물 등 심의 프로세스



5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내용	평가		
		우수	보통	불량
설치 위치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규격	옥외광고물의 규격이 간판 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가			
	동일 건축물 내 광고물의 규격이 통일되었는가			
안전	옥외광고물의 결합상태가 양호한가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는가			
	전기구조 및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			
표기 요소	표기 내용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자간 및 장평의 변형으로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글자체로 계획되지 않았는가			
재질	표기내용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재질이 사용되었는가			
	변색 및 파손에 강한 재료로 계획되었는가			
색채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가 적용되었는가			
	건축물과 조화로운 색채가 사용되었는가			
	표기내용 및 전체 배색이 가시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조명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로 계획되었는가			
	표기내용을 가독하기에 적당한 휘도로 계획되었는가			
	효율성이 높은 조명소재가 적용되었는가			
심사평가				

IV. 가이드라인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 2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표시·설치 가이드라인
- 3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1. 공공목적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일반사항
- 2 벽면이용간판
- 3 지주이용간판
- 4 벽보게시판
- 5 공공목적광고물 적용예

1 일반사항

기본원칙 및 목표



- 부조화된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경관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행자 위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 공공목적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유형·크기·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전라남도 이미지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적용지침

- 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전라남도 내 공공목적 광고물의 디자인·설계·설치·배치·유지·관리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도차원의 통합적 이미지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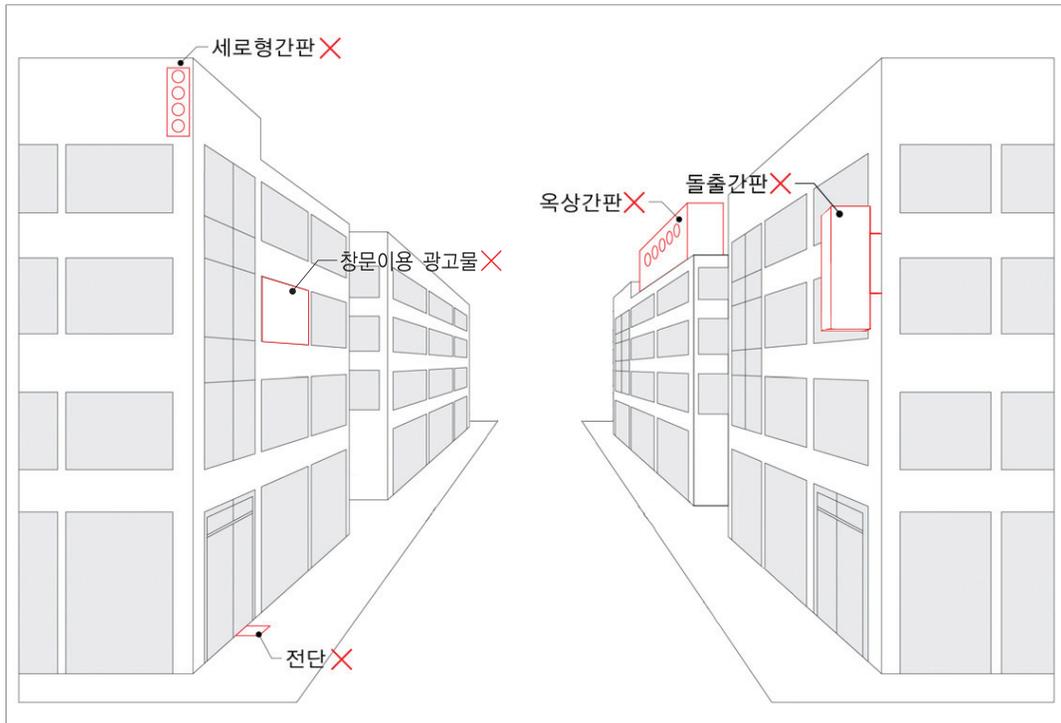
적용범위

-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 국가등의 건물 부지안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및 지정 벽보 게시대
- 시장·군수가 설치해 운영하는 지정게시대 및 벽보관
- 현수기 및 현수막

적용대상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현수기 및 현수기게시대	벽보게시판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금지 광고물 대상



수 량

- 기본적으로 1개의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제한
단, 건물의 규모나 면적,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를 허용

형태 및 규모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계획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
-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문자 및 그래픽 요소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기관, 관공서, 국가기관의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이미지 사용을 권장
- 너무 화려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간결한 형태의 문자와 픽토그램 및 그래픽 요소의 활용을 권장

색 채

- 1개의 옥외광고물에 사용하는 색상수는 3가지 이내로 제한,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는 색상수에서 제외
- 바탕색은 건물 마감재와 지나치게 대비되는 색상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의 사용 권장
- 국가기관, 관공서, 국가기관의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 사용 권장
- 적, 청, 황의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금지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은 예외로 함
- 형광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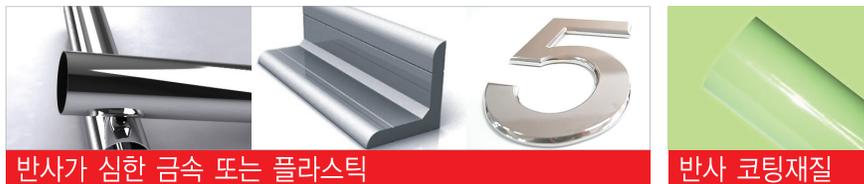
금지 색채 및 배색



재 질

- 지역특성 및 기후를 고려하여 부식 및 바람에 강한 재질 사용
- 빛반사가 심한 금속이나 재질의 노출을 금지, 단 구조재로 사용시 빛반사 방지 도장, 마감재 처리
- 전라남도의 모토에 상응하는 친환경 재질 및 자연소재 사용 권장
- 광효율이 좋은 LED조명 사용

금지 마감재



금지 조명



권장 마감재



권장 조명



2 벽면이용간판

일 반

- 1개 건물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
- 입체형의 가로형 간판으로만 설치
- 건물의 규모나 면적,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

위 치

- 건물정면의 상단 우측에만 입체형으로 설치. 단 건물의 구조상 상단 우측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단 중앙에 설치

규격·설치방법

- 간판의 가로길이는 해당건물 가로길이의 1/2 이내로 표시
- 간판의 세로길이는 설치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00cm이내로 표시
- 간판의 돌출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설치
- 문자 및 그래픽요소의 크기는 평균값으로 계산하며, 변형된 형태는 심의를 거쳐 설치
- 건물의 측면·후면에는 설치금지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좋은사례



3 지주이용간판

일 반

- 당해 건물부지 내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 단, 건물의 규모나 면적,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위 치

- 건물이나 해당 부지 안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규정

규격·설치방법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로 규정
- 1면의 최대면적은 6㎡이내로 규정
- 총 면적은 24㎡이내로 규정
-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식을 금지
- 자연소재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질 및 조명 사용 권장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좋은사례



4 벽보게시판

일 반

- 당해 건물부지 내에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벽보게시판
- 건물의 규모나 면적, 형태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량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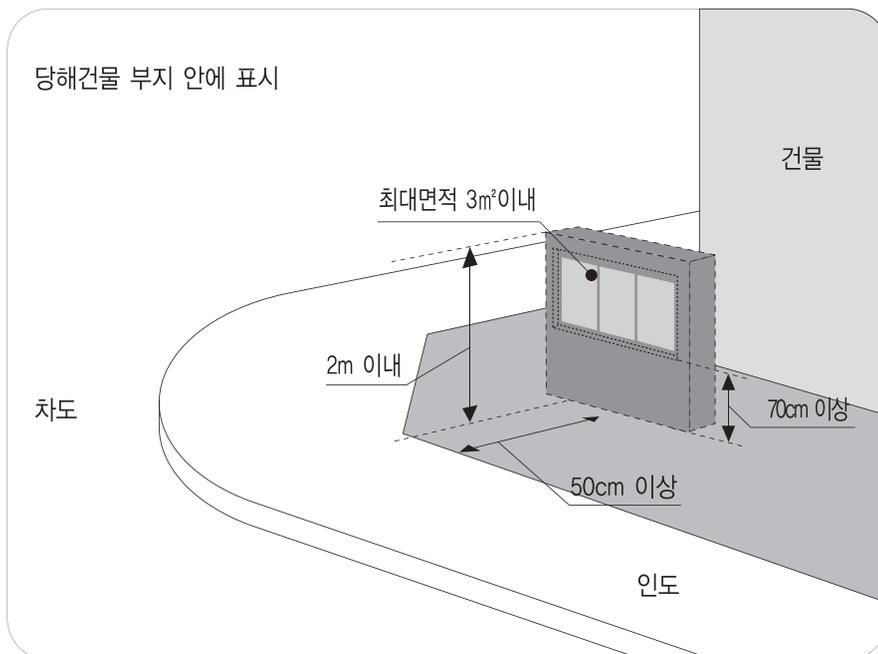
위 치

- 건물이나 해당 부지 안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

규격·설치방법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로 규정
- 게시면의 최대면적은 3㎡이내로 규정
- 게시면은 지면으로부터 70cm이상의 간격을 확보
- 자연소재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질 사용 권장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가이드라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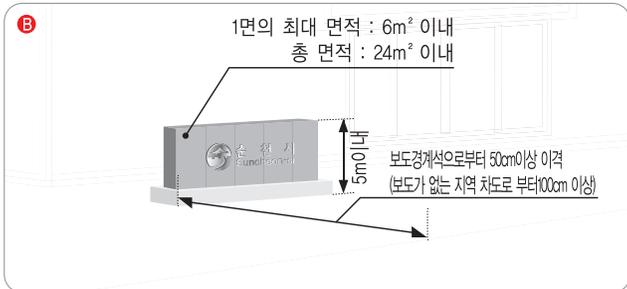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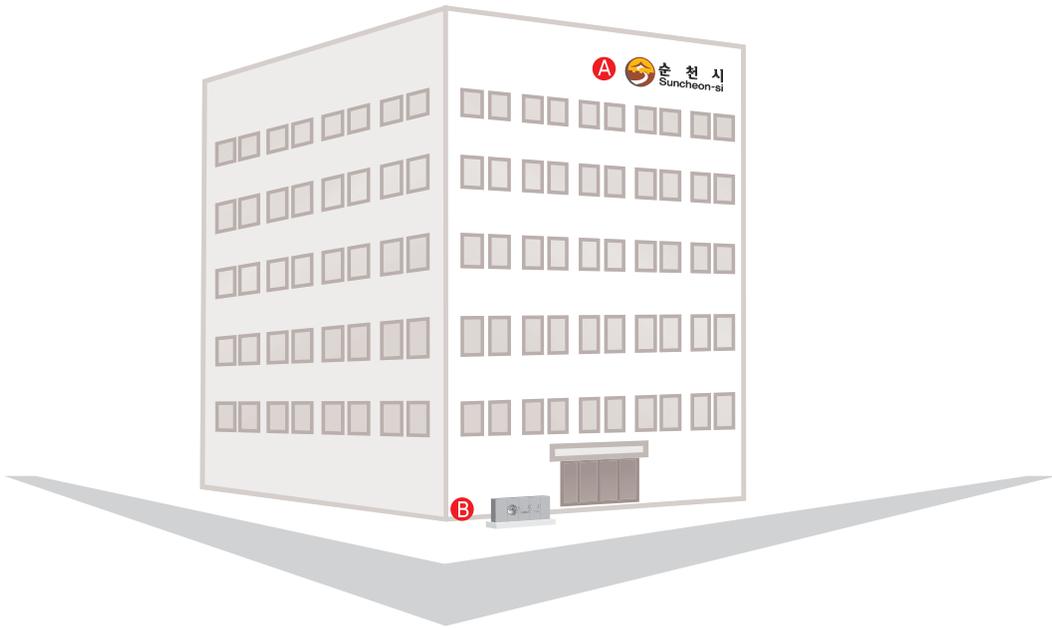


5 공공목적광고물 적용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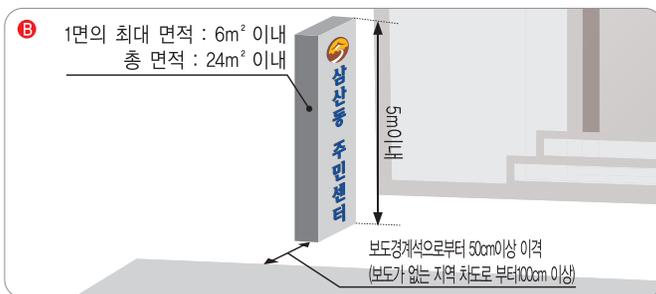
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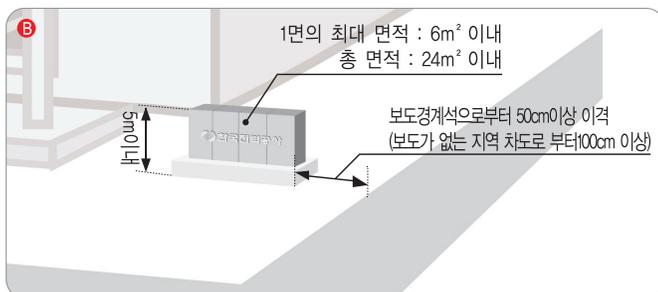
시·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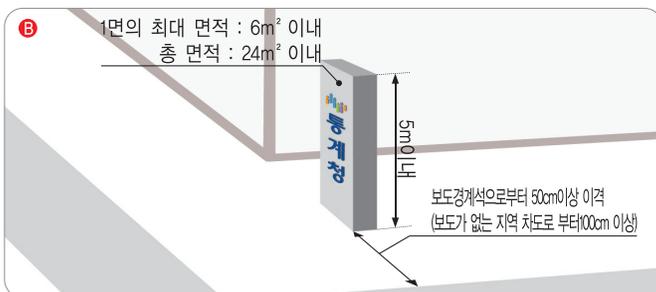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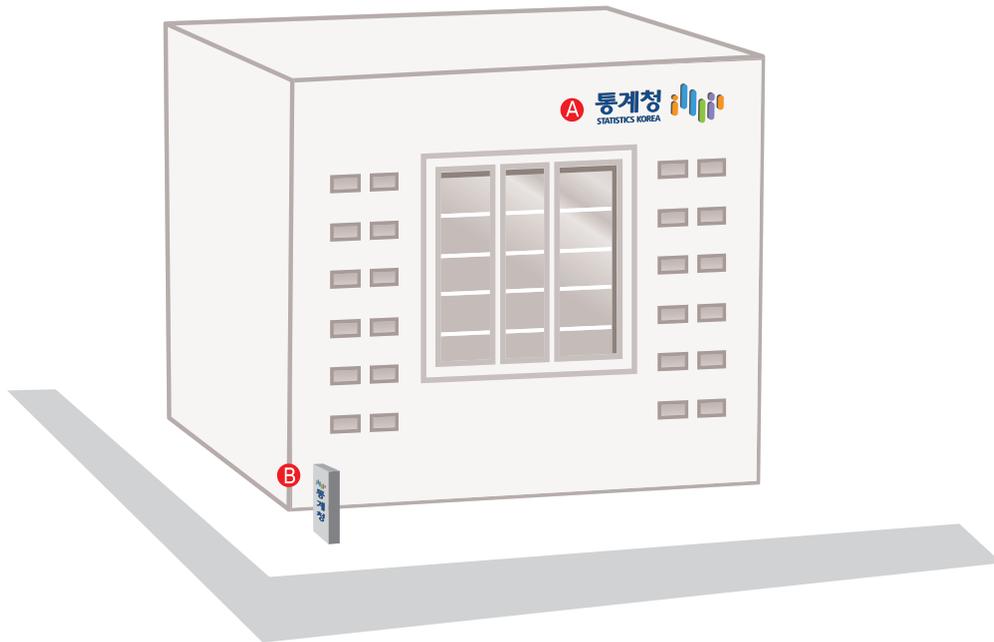


읍·면·동사무소



공사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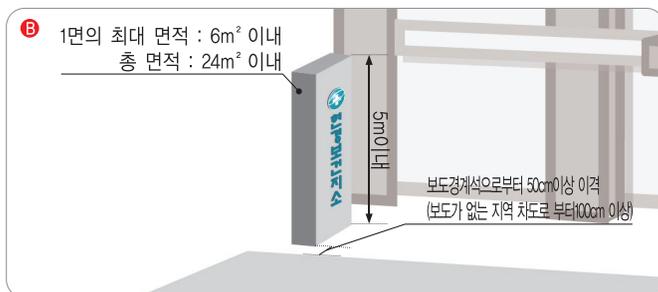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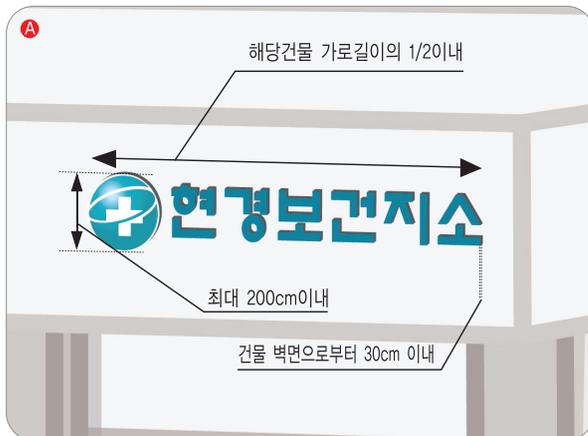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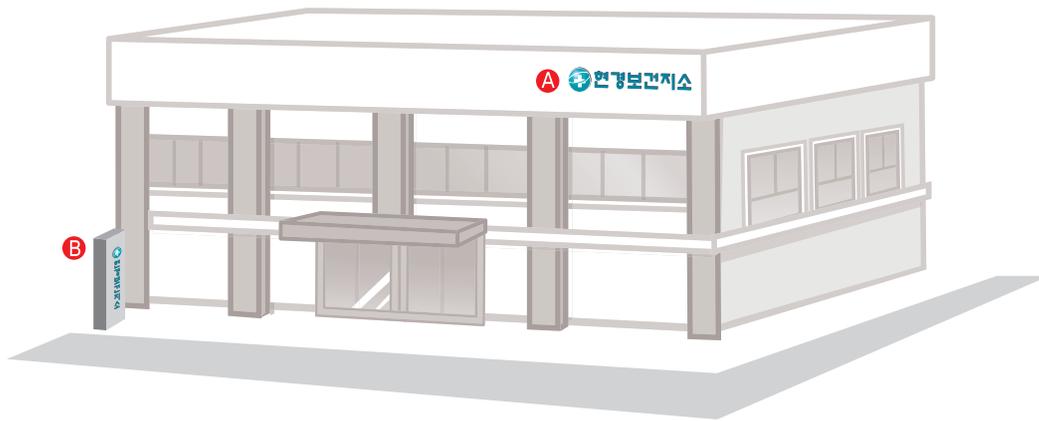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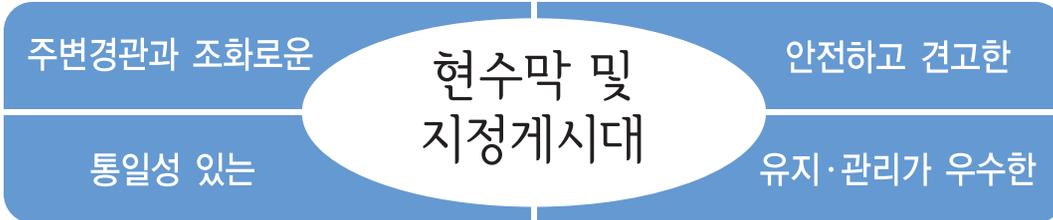
2.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표시·설치 가이드라인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일반사항
- 2 현수기 및 현수기게시대
- 3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 4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적용예
- 5 현수막지정게시대 표준디자인안

1 일반사항

기본원칙 및 목표



- 통일성·심미성 결여 및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형태의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에 대한 수량·유형·크기·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전라남도 이미지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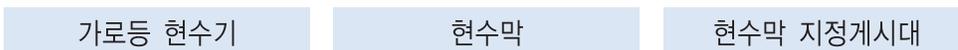
적용지침

- 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전라남도 내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의 디자인·설계·설치·배치·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도차원의 통합적 이미지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

적용범위

- 축제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국가등의 건물부지내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
-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 현수막, 현수기

적용대상



수 량

- 현수기의 경우 1개의 가로등주에 2개 이내로 설치
- 현수막의 경우 1개의 지정게시대에 5개 이내로 설치

형태 및 규모

- 현수기 및 현수막은 게시대의 정확한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
- 동일 게시대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 및 규격을 동일하게 설치
- 현수기 및 현수막게시를 위한 전기 또는 전기장치, 조명의 사용을 금지

문자 및 그래픽 요소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관 및 기업의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이미지 사용을 권장
- 너무 화려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간결한 형태의 문자와 픽토그램 및 그래픽 요소의 활용을 권장
-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래픽이나 비속어, 문자의 사용을 금지

표시기간

- 현수막 : 15일 이내
- 현수기 : 30일 이내

색채

- 현수기 및 현수막에 사용하는 색상수는 3가지 이내로 제한,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는 색상수에서 제외
- 바탕색은 주변환경과 지나치게 대비되는 색상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환경의 계통색 사용을 권장
- 각 기관의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 사용 권장
- 적, 청, 황의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금지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은 예외로 함
- 형광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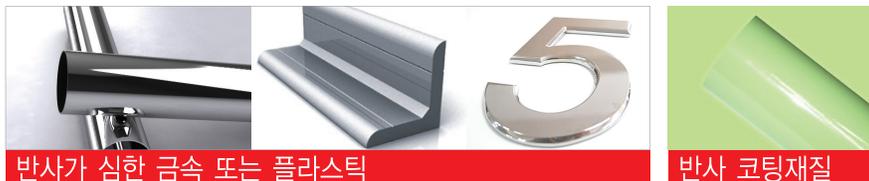
금지 바탕색



게시대 재질

- 지역특성 및 기후를 고려하여 부식 및 바람에 강한 재질 사용
- 빛반사가 심한 금속이나 재질의 노출을 금지, 단 구조재로 사용시 빛반사 방지 도장, 마감재 처리

금지 마감재



권장 마감재



2 현수기 및 현수기계시대

일 반

-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기간동안 설치

위 치

- 가로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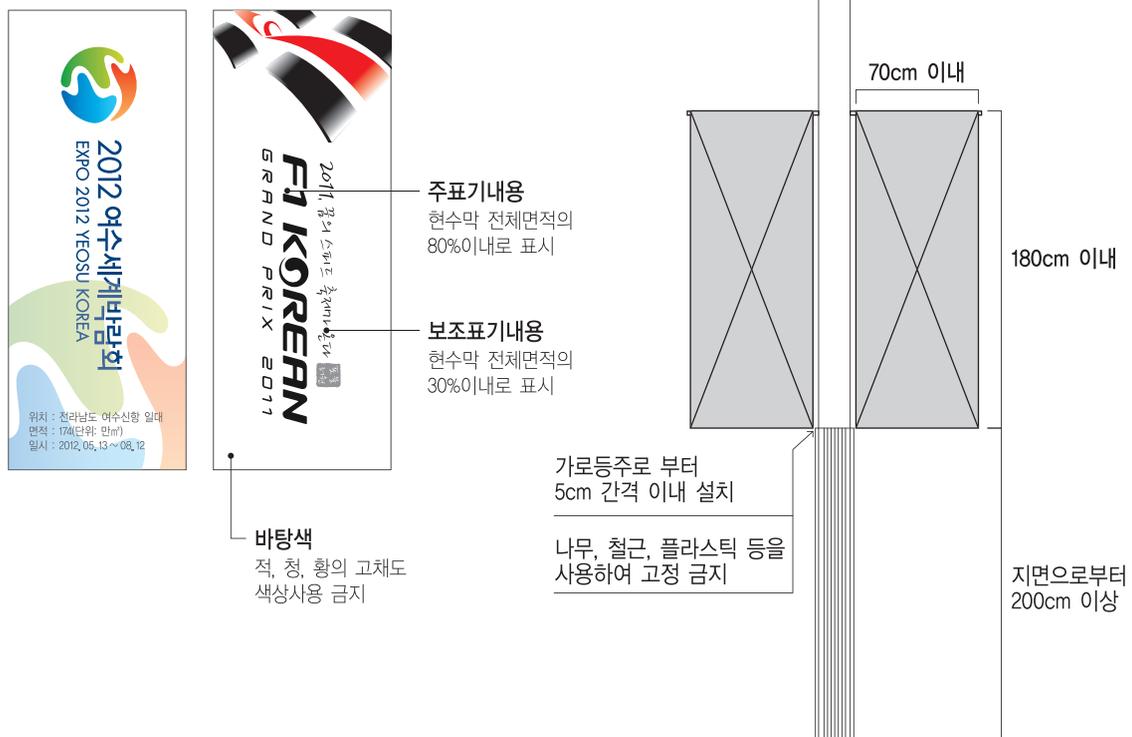
현수기계시대

- 현수기는 하나의 가로등주에 2개 이내로 설치
- 지면에서의 현수기 밑부분까지는 200cm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가로등주와 5cm이내로 밀착하여 부착
-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 금지
-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

현수기표시방법

- 현수막의 바탕색 및 글자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높은 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
- 현수기의 가로길이는 70cm이내로 설치
- 현수기의 세로길이는 180cm이내로 설치
- 선정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래픽 요소 또는 비속어의 사용을 금지
- 표기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80%이내로 하며,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30%이내로 표시

가이드라인 예시



3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일 반

- 현수막은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만 게시

위 치

- 현수막지정게시대

현수막지정게시대

-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해야 하며, 가로는 5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이내로 설치
-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5개 이내의 현수막 게시물을 설치
- 지정게시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 지정게시대 설치는 시장·군수가 위치를 선정하여 시·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현수막표시방법

- 현수막의 바탕색 및 글자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높은 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
- 현수막의 가로크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고정틀 크기로 규정
- 현수막의 세로크기는 70cm이내로 규정
- 선정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래픽 요소 또는 비속어의 사용을 금지
- 표기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80%이내로 하며, 주표기 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 크기는 현수막 가로 크기의 75%이내로 표시
- 보조표기내용의 면적은 현수막 면적의 30%이내로 표시

4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 적용예

현수막



바탕색

적, 청, 황의 고채도
색상사용 금지

주표기내용

현수막 전체면적의 80%이내,
가로길이는 현수막 가로길이의
75%이내로 표시

보조표기내용

현수막 전체면적의 30%이내로 표시



바탕색

적, 청, 황의 고채도
색상사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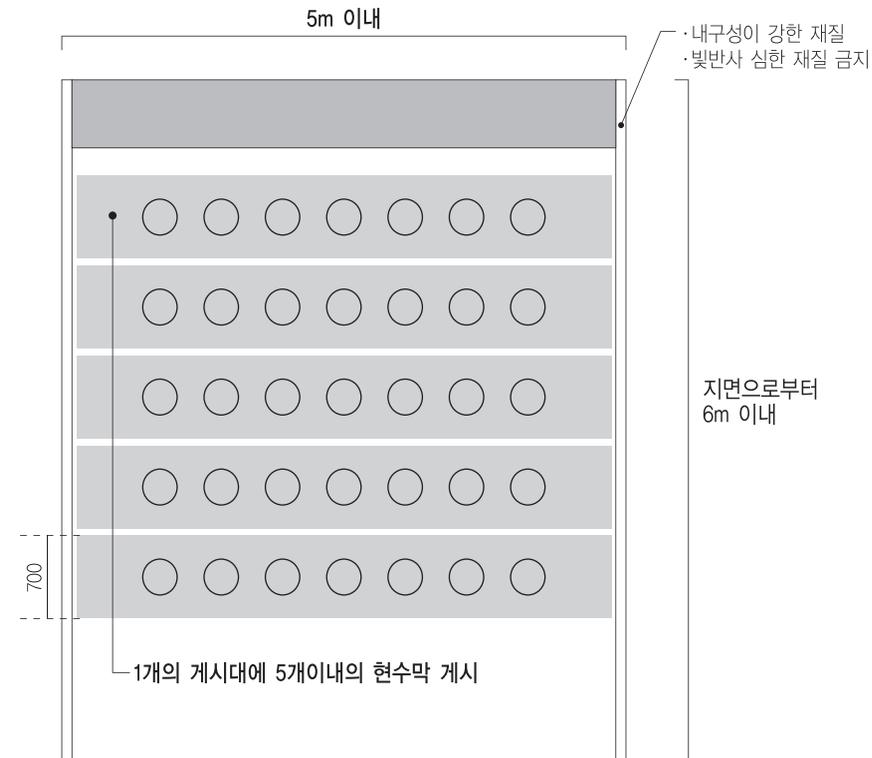
주표기내용

현수막 전체면적의 80%이내,
가로길이는 현수막 가로길이의
75%이내로 표시

보조표기내용

현수막 전체면적의 30%이내로 표시

현수막지정게시대



5 현수막지정계시대 표준디자인안

Type A

도심권

해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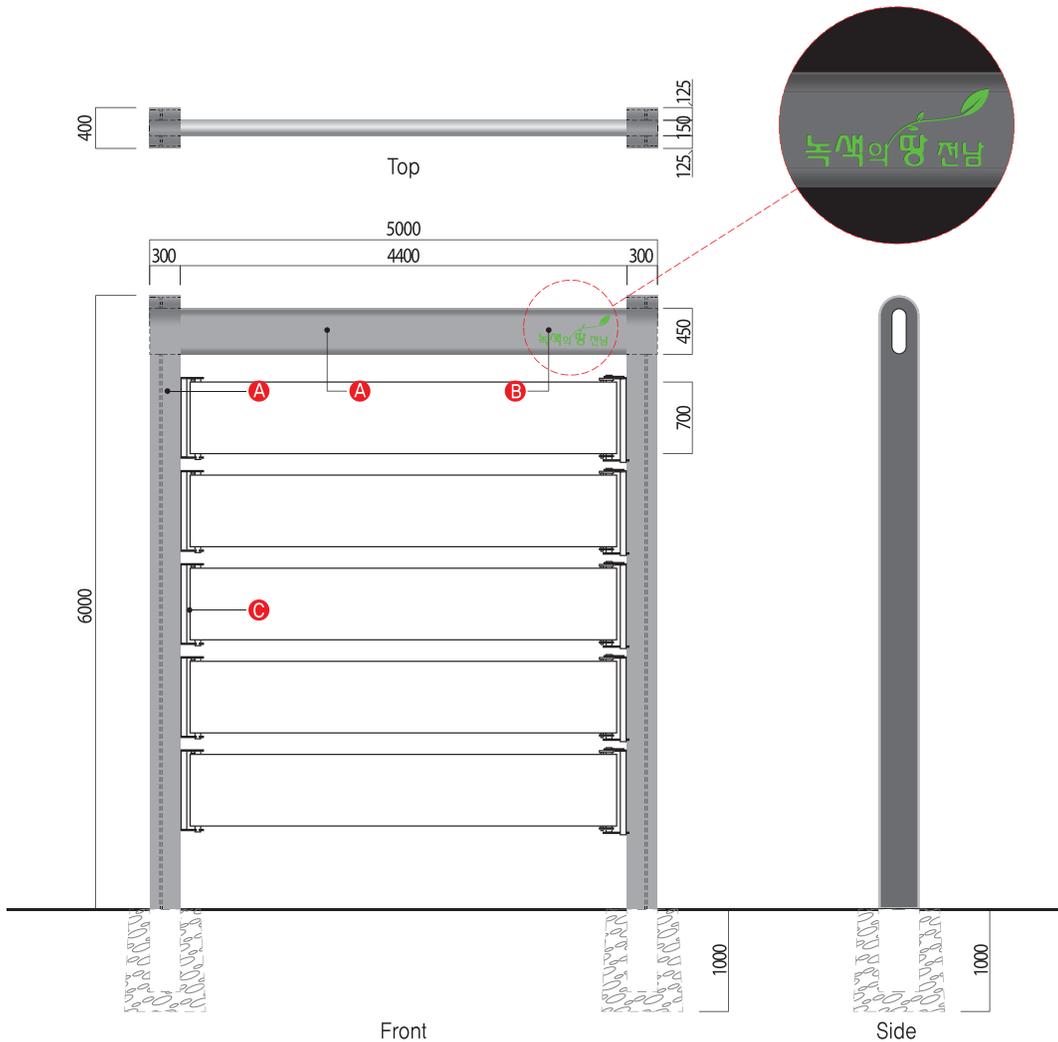


C0 M10 Y0 K35

Size 5000(W) X 6000(H) X 400(D)

Fin 지정색상 분체도장 마감

Materials **A** THK 10mm STS
B LED Sign
C 레버식 고정틀



Type B

전원산악권

관광문화권

역사전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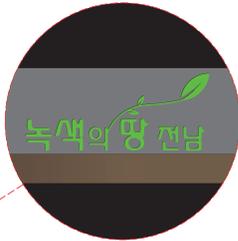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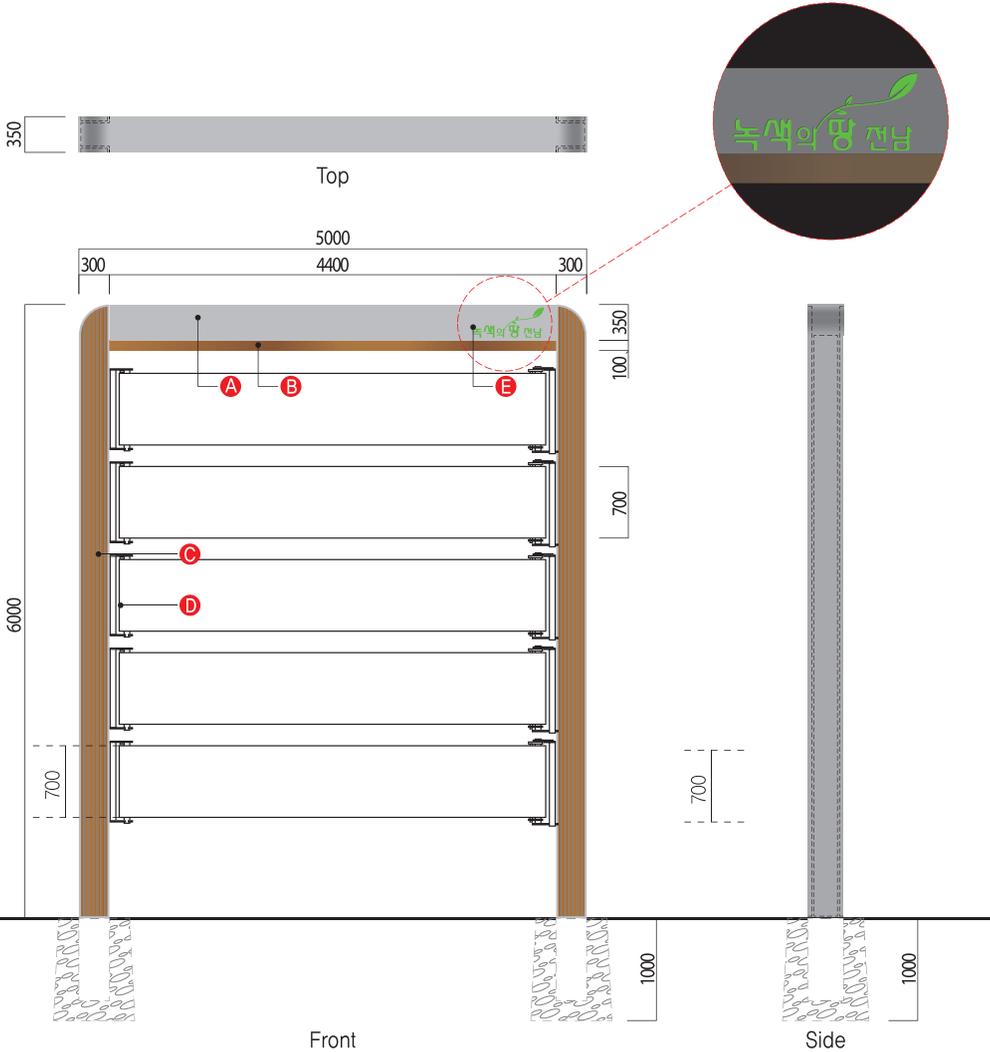
C0 M10 Y0 K35

Size 5000(W) X 6000(H) X 400(D)

Fin 지정색상 분체도장 마감

Materials

- A THK 10mm STS
- B 하드우드
- C THK 20mm 하드우드 루터가공
- D 레버식 고정틀
- E LED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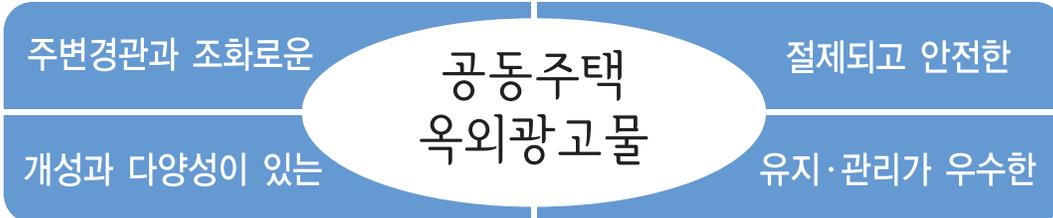
3.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 1 일반사항
- 2 공동주택간판
- 3 공동주택간판 적용예
- 4 공동주택상가 가로형간판
- 5 공동주택상가 지주이용간판
- 6 공동주택상가 연립형 가로형간판
- 7 공동주택상가 적용예

1 일반사항

기본원칙 및 목표



- 부조화된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경관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행자 위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쾌적하고 매력적인 전라남도 이미지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적용지침

- 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전라남도 내 공동주택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설계·설치·배치·유지·관리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도차원의 통합적 이미지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활용

적용범위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 공동주택상가 옥외광고물

적용대상

- 공동주택 간판
- 공동주택상가가로형간판
- 공동주택상가 연립형간판

수 량

-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양면에 1개씩 설치
- 공동주택상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1개업소에 1개의 간판을 원칙으로 총수량 1개로 제한 단, 곡 각지점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설치 가능

형태 및 규모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계획
-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
-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문자 및 그래픽 요소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 및 업체의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이미지 사용을 권장
- 너무 화려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간결한 형태의 문자 사용을 권장
-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볼 사용을 권장

색 채

- 1개의 옥외광고물에 사용하는 색상수는 4가지 이내로 제한,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심볼·로고·전용패턴·픽토그램·기호는 색상수에서 제외
- 바탕색은 건물 마감재와 지나치게 대비되는 색상의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의 사용 권장
- 브랜드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 사용 권장
- 적, 청, 황의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금지 단, 이미지 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전용색상은 예외로 함
- 형광 또는 야광 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의 사용을 금지

금지 색채 및 배색



재 질

- 지역특성 및 기후를 고려하여 부식 및 바람에 강한 재질 사용
- 빛반사가 심한 금속이나 재질의 노출을 금지, 단 구조재로 사용시 빛반사 방지 도장, 마감재 처리
- 전라남도의 모토에 상응하는 친환경 재질 및 자연소재 사용 권장
- 광효율이 좋은 LED조명 사용

금지 마감재



반사가 심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

반사 코팅재질

금지 조명



광원 노출

투광 조명

권장 마감재



무반사 페인트

목재

석재

권장 조명



간접 조명

2 공동주택간판

일 반

-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양면에 1개씩 설치
- 가로형간판 사용
- 가로형간판 이외에 단지, 동수의 표시
- 공동주택 옥외광고물의 경우 건축허가시 옥외광고 및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시행건축사의 상호브랜드로 표시할 수 없으며, 주소에 나와있는 공동주택명을 사용해야 함

위 치

- 가로형간판의 경우 건물측면의 상단에만 설치
- 단지, 동수의 경우 가로형 간판 설치면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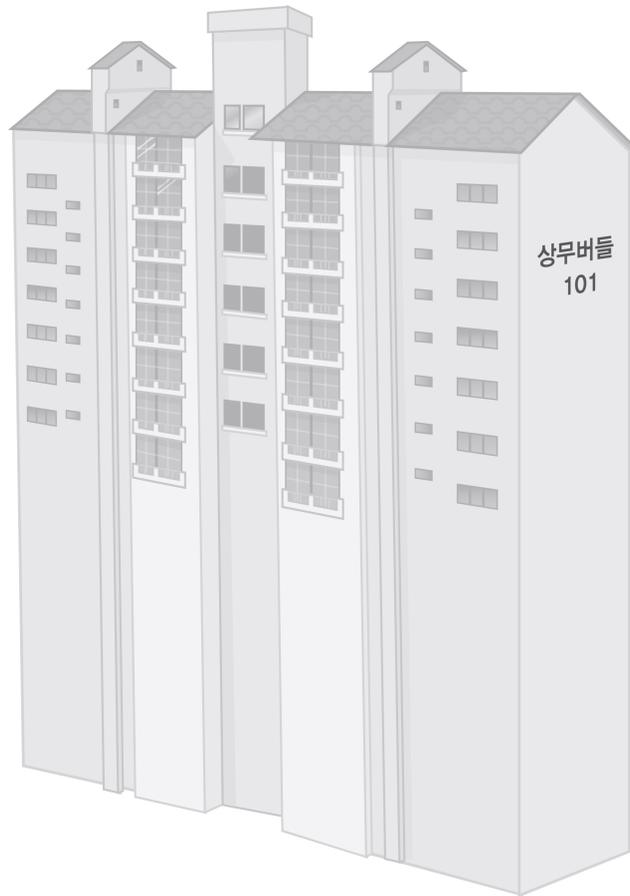
규격·설치방법

- 공동주택의 간판은 가로형으로만 설치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입체형 또는 판류형 간판 설치(조명사용시 광효율이 좋은 LED 사용)
- 간판의 가로길이는 건물 측면 가로길이의 60%이내로 표시
- 간판의 세로길이는 최대 250cm이내로 표시
- 단지, 동수의 가로길이는 건물 측면 가로길이의 40%이내로 표시
- 단지, 동수의 세로길이는 200cm이내로 표시
- 문자 및 그래픽요소의 크기는 평균값으로 계산하며, 변형된 형태는 심의를 거쳐 설치
- 건물의 정·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하며,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좋은사례



3 공동주택간판 적용예



4 공동주택상가 가로형간판

일 반

- 1개 건물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 단, 도로 곡각지점 또는 건물의 전후면이 도로에 접한경우 2개까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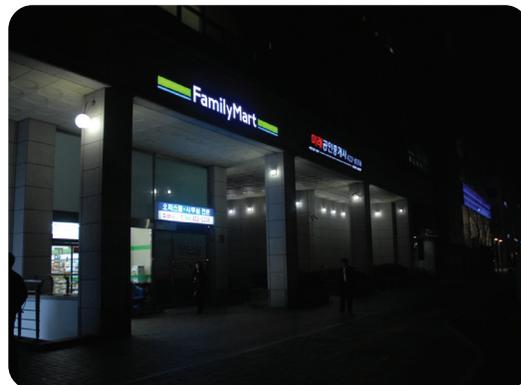
위 치

- 건물정면의 3층 이하에만 입체형으로 설치
- 동일 건물내의 가로간판 설치 위치는 시각적으로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

규격·설치방법

-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이내로 표시
- 간판의 세로 크기는 설치 벽면 높이를 초과 금지
- 간판의 돌출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설치
- 글자의 세로크기는 글자당 최대 60cm 이하로 규정
- 가로크기 8m이상 간판의 경우 시군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
- 광효율이 좋은 LED조명 사용

좋은사례



5 공동주택상가 지주이용간판

일 반

- 1개 건물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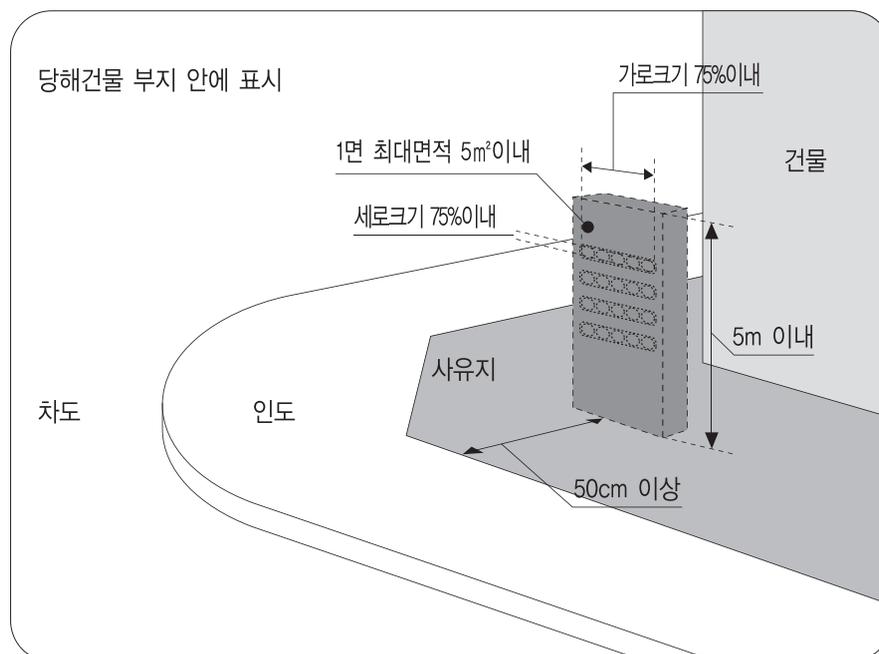
위 치

- 건물이나 해당 부지 안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규정

규격·설치방법

- 상가부지안에 지주이용간판을 활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이내로 규정
- 1면의 최대면적은 5㎡이내로 규정
- 총 면적은 16㎡이내로 규정
- 지주이용간판에 표시되는 업소간판은 재질 및 형태, 색상을 통일해야함
- 상호 또는 브랜드명 등의 대표적인 내용만을 표시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업소당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로 표시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업소당 간판 세로크기의 75%이내로 표시
- 네온,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또는 점멸 등의 방식을 금지
- 자연소재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질 사용 권장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가이드라인 예시



6 공동주택상가 연립형 가로형간판

일 반

- 1개 건물에 1개의 간판만을 설치
-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나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하는 구조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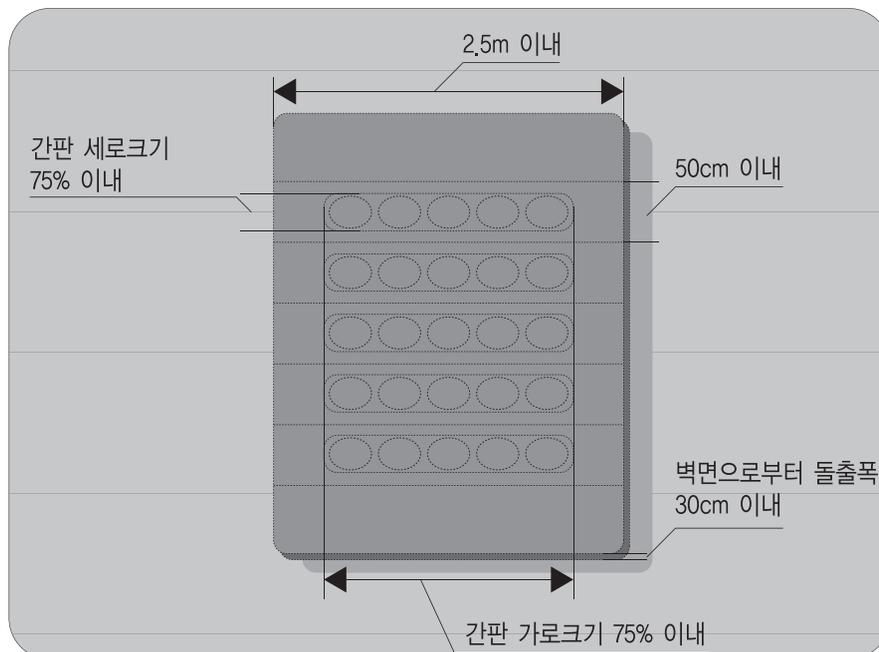
위 치

- 상가건물 기둥, 벽면을 활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

규격·설치방법

- 간판의 가로길이는개업소당 2.5m이내로, 세로길이는 1개업소당 50cm이내로 규정
- 간판의 돌출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이내로 설치
- 같은건물의 연립형가로간판의 재질 및 형태, 색상은 동일해야함
- 상호 또는 브랜드명 등의 대표적인 내용만을 표시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업소당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로 표시
- 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세로크기는 업소당 간판 세로크기의 75%이내로 표시
- 보조 표기내용의 면적은 업소당 간판면적의 40%이내로 규정
- 자연소재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재질 사용 권장
- 구조재 및 전기설비의 노출 금지

가이드라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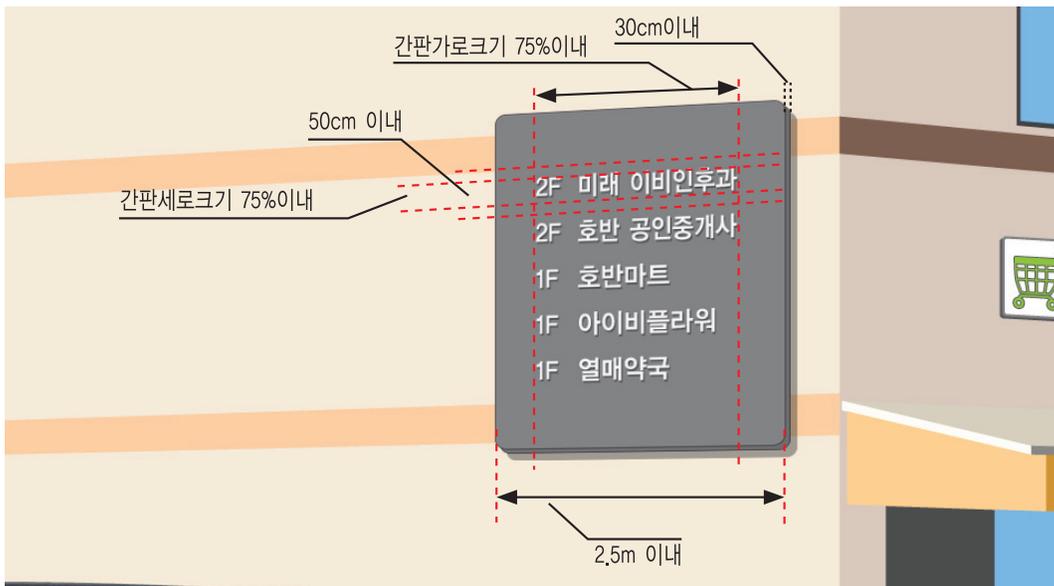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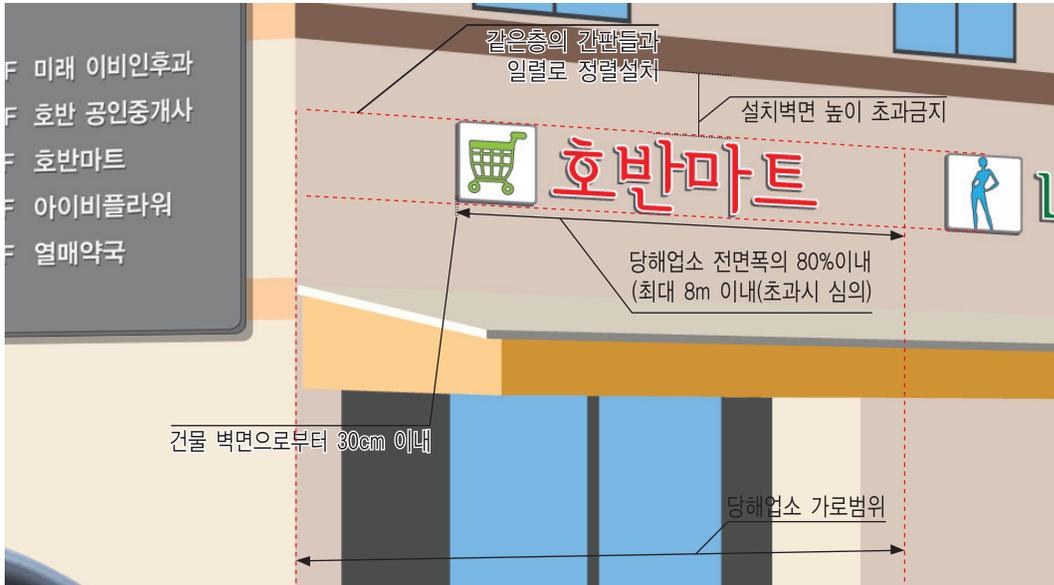
7 공동주택상가 적용예

기 존



가이드라인 적용







Jeollanamdo Public_Purposed Advertisement Guideline

2010